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

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개정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1. 6. 24.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는 경우, 그 대상을 제주4·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에서 제주4·3사건 피해로 인한 경우로 확대함 (안 제2조)
- 위 위원회가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함 (안 제6조)

4.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
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
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제주4·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
법」 제11조”를 “「제주4·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
특별법」 제12조”로, “정정절차”를 “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
실종선고의 신고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
에서 재제누락, 등재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”를 “제주4·3사건 피해”
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신청권자)”를 “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)”
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조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2항”
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신청절차)”를 “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)”
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시·읍·면의 장의 처리)”를“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·읍·면의 장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“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, 등재 누락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”를“가족관계등록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“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”를“가족관계등록부”로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6조)를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그 밖에 신청·신고절차 및 시·읍·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실종신고 신고)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 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2조에 따른 실종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제주4·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<u>정정절차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)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(이하 “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”이라 한다)의 대상은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희생자로서, <u>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, 등재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,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 (<u>신청권자</u>) 가족관계등록부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제주4·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----- ----- <u>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</u>-----.</p> <p>제2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주4·3사건 피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 (<u>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</u></p>

의 작성 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.

제4조 (신청절차) ① ~ ③ (생략)

제5조 (시·읍·면의 장의 처리)

시(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,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,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. 다만,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·면지역에 대하여는 읍·면, 읍·면의 장 또는 읍·면의 사무소를 말한다)·읍·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, 등재누락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

신청권자) -----

----- 법 제5조제2항-----

-----.

제4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

관한 시·읍·면의 장의 처리) -

-----.

1. 가족관계등록부-----

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,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

2. 제주4·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

<신 설>

제6조 (일반사항) (생 략)

<신 설>

2. 가족관계등록부-----

제6조 (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)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제7조 (일반사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그 밖에 신청·신고절차 및 시·읍·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